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
일부개정법률안
(최재형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	24358
--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3. 9. 11.

발의자 : 최재형 · 이종성 · 김석기
김예지 · 조명희 · 황보승희
정우택 · 태영호 · 박수영
김희곤 · 김영선 의원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대하여 최근 현법재판소는 손해배상금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은 합헌으로 결정하였으나, 그 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준 없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부분은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점을 이유로 현법불합치 결정을 하였음(2018헌바504).

이에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을 의료분쟁 발생현황, 대불제도 이용실적,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산정 · 부과 · 징수하도록 산정기준과 주체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려

는 것임.

또한, 조정중재원이 손해배상금 대불청구를 받으면 손해배상 의무자가 대불금을 얼마나 상환할 수 있을지 등을 고려하여 대불하도록 하고, 대불금에는 상한액을 둘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불비용의 재원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(안 제47조제3항 신설 등).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3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4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, 같은 조 제4항(종전의 제3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5항(종전의 제4항) 전단 중 “제2항”을 “제3항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6항(종전의 제5항)을 다음과 같이 하며, 같은 조 제7항(종전의 제6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, “해당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”을 “손해배상의무자”로 하고, 같은 조 제8항(종전의 제7항) 중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9항(종전의 제8항) 중 “제5항”을 “제6항”으로, “제6항”을 “제7항”으로, “제7항”을 “제8항”으로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(이하 이 조에서 “대불비용”이라 한다)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

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, 대불제도 이용실적,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·부과·징수하며,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

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·부과·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.

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(이하 이 조에서 “손해배상의무자”라 한다)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·상환 예상액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에 대하여 그 상한액을 정할 수 있다.

제48조제1항 중 “제47조제6항”을 “제47조제7항”으로, “제7항”을 “제8 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47조(손해배상금 대불) ① (생략)</p> <p><u>② 보건의료기관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고, 그 금액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<신 설></u></p> <p><u>③ 조정중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7조(손해배상금 대불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<u>② 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금의 대불에 필요한 비용(이하 이조에서 “대불비용”이라 한다)을 충당하기 위한 재원은 보건의료기관개설자가 부담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분쟁 발생현황, 대불제도 이용실적, 예상 대불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로 부담하여야 하는 대불비용 부담액을 산정·부과·징수하며,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과 납부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</u></p> <p><u>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기관개설자별 대불비용 부담액의 산정·부과·징수 업무를 조정중재원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조정중</u></p>

	<p><u>재원은 손해배상금 대불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 계정을 설치하여야 한다.</u></p>
<u>④ 제2항에 따라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부담하는 비용은 「국민건강보험법」 제47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. 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기관에 지급하여야 할 요양급여비용의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조정중재원에 지급하여야 한다.</u>	<p><u>⑤ 제3항-----</u>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.</p>
<u>⑤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.</u>	<p><u>⑥ 조정중재원은 제1항에 따른 대불청구가 있는 때에는 손해배상 의무가 있는 보건의료기관개설자 또는 보건의료인(이하 이 조에서 “손해배상의무자”라 한다)의 대불금 상환 가능성·상환 예상액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심</u></p>

	<p><u>사하고 대불하여야 한다. 이 경</u> <u>우 조정중재원은 대통령령으로</u> <u>정하는 바에 따라 대불금에 대</u> <u>하여 그 상한액을 정할 수 있</u> <u>다.</u></p> <p><u>⑦ -----제6항-----</u> <u>-----손</u> <u>해배상의무자-----</u> -----</p> <p><u>⑧ -----제7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<u>⑨ 제6항-----</u> ----- -----<u>제7항-----</u> -----<u>제8항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48조(자료의 제공) ① 원장은 <u>제47조제6항에 따른 구상 및</u> 같은 조 <u>제7항에 따른 결손처</u></p>
--	--

분을 위하여 국가·지방자치단체, 「국민건강보험법」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기관에 국세·지방세, 토지·주택·건축물·자동차·선박·항공기, 주민등록·가족관계등록, 국민건강보험·국민연금·고용보험·산업재해보상보험·보훈급여·공무원연금·군인연금·사립학교교직원연금·별정우체국연금·기초연금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	
(2) (생략)	(2) (현행과 같음)